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적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②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한다.
 1.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자동이체 약정은 만기해지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자동이체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우대이율 제공이 불가하다.
 2.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은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며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확인한다.

제9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 ②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율로 계산한다.

제10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만기 자동 재예치】

- ① 신규 가입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 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동안 세후원리금을 1년단위로 자동 재예치 된다. 단, 재예치 기간내에 만 18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예치까지만 가능하다.

주니어우대자유적금

제1조 【적용범위】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의 성격】

이 적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3년(연단위)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1년단위로 자동 재 예치 약정이 가능하다.

제5조 【적립금액】

신규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제한이 없으며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

제6조 【기본이율】

신규 가입일 현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고시한 정기적금 해당기간 만기 이율에 연 0.1%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 【우대이율】

- ①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1.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 시 연 0.1%p
 2. 형제, 자매, 남매의 동시 가입 시 연 0.1%p
 3. 만기해지 후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으로 전환 시 해당 거치식 예금 이율에 연 0.05%p 우대
- ②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시행일

- ② 자동 재예치시 **기본이율은 재예치 시점 기간 이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율 (자동이체 약정,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거치식 예금 전환)은 최초 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조 【우대서비스 제공】

- ① 신규 가입 후 거래실적에 따라 제휴기관인 M&서비스(<http://www.skmins.co.kr>)에서 제공하는 **휴대폰무료이용권**을 SMS서비스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1년간 제공하며, 우체국 및 제휴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구 분	자유적금
최초가입	1개
자동이체	1개
생 일	1개
어린이날 또는 학생의 날	1개
합 계	4개

※ 어린이날 및 학생의날 지급기준

- 만 12세 이하 : 어린이날 (5월 5일)
- 만 12세 초과 ~ 만 19세 미만 : 학생의날 (11월 3일)

※ 휴대폰무료이용권 등록 채널

- 스마트폰 : <http://m.toyoucard.co.kr> > 쿠폰 등록하기
- 온라인 : <http://www.toyoucard.co.kr> > toyou 카드 등록

제15조 【분할해지】

가입기간 동안 3회(최종 해지 포함)까지 적금 잔액의 90%범위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적용이율은 분할해지 시점의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6 【기타】

- ① 이 예금은 일반과세,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② 양도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된다.

부 칙

- ① 이 특약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